

‘13. 11. 11~15

- 제182회 충주시의회(임시회) -

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

경제건설국장

질문요지서 목록

| 의원명 | 질 문 요 지 | 비고 |
|-------|---|----|
| 계 | 1명 / 1건 | |
| ① 서성식 | <p>1. 칠금 신촌↔칠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추진되고 있는지? ①무술공원 이용에 따른 교통난과 방문 관광객의 편익 및 조기추진을 위하여 보상과 공사비 확보는 가능한지</p> | |

○ 서면제출 (3명 / 3건)

| 의원명 | 질 문 요 지 | 비고 |
|-------|--|----|
| ① 이종구 | 1. 주덕 7호선 소로2길 새터 ~ 마치길 향후 추진계획은? | |
| ② 최근배 | 1. 충주시내 도로부지의 사유지에 대한 보상 및 도로부지의 확보대책 | |
| ③ 서성식 | <p>1.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강제이행금 처리 대책은 ①강제이행금 미징수에 따른 행정조치나 대책은</p> | |

답변요지서

| | | | |
|------|-----|-------|--------|
| 질문의원 | 서성식 | 답변공무원 | 경제건설국장 |
|------|-----|-------|--------|

□ 질문내용

- 칠금 신촌↔칠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추진되고 있는지?
 - 무술공원 이용에 따른 교통난과 방문 관광객의 편의 및 조기 추진을 위하여 보상과 공사비 확보는 가능한지

□ 답변내용

- 칠금신촌 ~ 칠지마을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세계무술공원 주진입로를 개설하는 공사로서 총사업비 6,610백만원(공사 3,200백만원, 보상 3,410백만원)이 소요되며, 사업량은 L=800m, B=27m임.
- 2012년 2월 토지분할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, 현재까지 보상비 2,265백만원을 확보하여 전체 토지 70필지, 면적 12,791m², 지장물 14건 중 66%의 보상을 완료하였음.
- 향후 보상비 부족분 1,145백만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보상완료 후 공사비를 확보하여 준공계획임.

답변요지서(서면)

| | | | |
|------|-----|-------|--------|
| 질문의원 | 이종구 | 답변공무원 | 경제건설국장 |
|------|-----|-------|--------|

□ 질문내용

- 주덕 7호선 소로2길 새터~마치길 향후 추진계획은?

□ 답변내용

- 새터 ~ 마치길간 주덕철도육교를 중심으로 마을 통과하는 도로 (주덕2-주덕7호선, L=200m)는 폭원이 6m로서 기개설되어 이용되고 있는 도로로서
-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확장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교통량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사업추진 등 확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음.

답변요지서(서면)

| | | | |
|------|-----|-------|--------|
| 질문의원 | 최근배 | 답변공무원 | 경제건설국장 |
|------|-----|-------|--------|

□ 질문내용

- 충주시내 도로부지의 사유지에 대한 보상 및 도로부지의 확보대책

□ 답변내용

- 시 관내 사유도로의 현황 파악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, 관습상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도로 등은 연말까지 실태 파악하여 현황을 별도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.

답변요지서(서면)

| 질문의원 | 서성식 | 답변공무원 | 경제건설국장 |
|---|-----|-------|--------|
| □ 질문내용 | | |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강제이행금 처리 대책은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강제이행금 미징수에 따른 행정조치나 대책은 | | | |
| □ 답변내용 | | | |
| <p>〈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이행강제금 처리절차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조사기간 : 매년 9월 1일 ~ 11월 30일 (90일간)○ 조사대상 : 1996. 1. 1이후 취득한 농지 | | | |
| <p><제외대상 농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국가·지자체 소유농지, 농지저당기관이 취득한 담보농지• 한계농지, 취득후 3개월미만 농지, 취득후 8년이상 자경농지• 취득후 3년이상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3년이상 계속 자경농지 등 | | |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조사기관 : 읍·면·동장 (한국농어촌공사 협조)○ 처분의무대상농지 : 1년이내 처분할 것을 통지 ※ 처분의무를 받은 자가 3년이상 성실하게 경작하거나, 제3자에게 매각하면 농지처분의무는 소멸○ 농지처분명령 : 처분의무기간내 미처분농지에 6개월이내에 처분하라는 농지처분명령 통지○ 이행강제금 부과 :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개별공시지가의 20%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·징수 ※ 이행강제금 =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 × 20/100 × 면적(m^2)○ 이행강제금의 귀속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이행강제금은 부과·징수한 시·군의 수입• 이의제기로 관할 법원으로 넘어간 이행강제금은 국고의 수입 | | | |
| <p><구제 방법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농지처분명령 이전에 처분의무통지를 받았을 경우에 이의제기나 다시 경작하는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음.• 그러나, 처분의무기간인 1년 이내에 아무런 조치들이 없었고 또 농지처분도 하지 않아 처분명령이 내려진 것이므로 반드시 매각을 해야하고 의무매각기간인 6월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| | | |

| 질문의원 | 서 성 식 | 답변공무원 | 경제건설국장 |
|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〈이행강제금 미징수에 따른 행정조치나 대책〉 | | |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법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• 이행강제금의 부과, 이의절차 및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농지법 시행령 제75조와 「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」을 준용 ○ 체납액에 대한 행정조치나 대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납기내 납부하지 않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납부안내문 및 독촉고지서 발송 납부 독려 (전화 및 방문 독려 추진) • 독촉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이행강제금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 추진 • 재산압류 후에도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으면 공매 추진 • 공매예고 통지 후 배당실의 등 권리분석 후 공매 의뢰 • 소멸시효가 도래한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 정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재산자 중점 추진 • 결손처분 후 5년이내 재산 발견시 결손취소 후 체납처분 | | | |
| 〈이행강제금 체납내역〉 | | |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체납현황 : 355건 788,153천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산압류 : 247건 420,306천원 - 2013년 결손처분 예정액 : 8건 4,629천원 | | |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행강제금 체납원인 및 징수대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행강제금 체납자의 경우 해당 토지 외에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고 압류한 토지도 근저당설정 등으로 공매처분을 해도 배당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음. •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후 공매를 추진하고 징수도 어렵고 재산압류도 할 수 없는 고질체납은 결손처분을 추진하여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음. | | | |